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길영 의원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6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길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19년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관리,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의결되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며,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등록·지원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갖게 되었습니다.

상위법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존치 필요성을 상실했기에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상위법 제정에 따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